

의안번호	제743호
의결 연 월 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10월 10일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743

제안연월일 : 2024년 10월 10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충북도의회는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충북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마크, 의회문장 등을 사용하고 있음.
- 또한 신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우리도의회만의 차별성을 담은 소통 로고 제작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 이에, 충북도의회 상징물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명 변경(안 제명)
 - (현행)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개정)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칙
- 상징물 정의 규정(안 제2조)
 - 총 4건 : 상징마크, 의회기, 의원배지, 소통로고신설
- 상징물 활용 범위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3조~4조)
 - 의회 홍보물품, (전자)문서, 응용상품의 개발·제작 등
- 상징물 사용승인 및 위반시 사용제한 신설(안 제6조~7조)
 - 신청서 제출시 14일 이내 승인, 승인 사항 외 사용시 사용 취소 등
- 각 상징물에 대한 의미 및 색상 기준 등 세부 기준 정의(별표1~4)

3. 규칙안(개정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북도규칙 제 호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상징물”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상징마크 : 별표 1
2. 의회기 : 별표 2
3. 의원배지 : 별표 3
4. 소통로고 : 별표 4

제3조(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 의장은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권의 출원) 의장은 상징물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을 출원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활용) 의장은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의회의 (전자)문서, 간행물, 홍보물, 관리물품 등에 적용
2. 의회 홍보물품 또는 응용상품의 개발·제작
3. 의정활동, 의회의 각종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1),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별지2)를 제출하여 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의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상징물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상징물을 승인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상징물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회기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 집무실에 단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달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단다.
-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10조(의원배지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며 패용은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 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으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총무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다시 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징마크

1. 심벌



<의미>

충청북도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은 우리나라의 상징인 무궁화꽃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표현한다.

일편단심을 의미하는 나라꽃 무궁화를 바탕으로 “의회”를 표기하여 도민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의원의 각오를 담아내고 있다.

외형 :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형상

중앙 :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를 원형 내에 표지

색상 : 무궁화형상과 원형테두리, 원형내의 “의회” 자 표지는 황금색으로 하고 원형 내의 바탕색은 자주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 할 때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색상 기준>

황금색인 “의회” 자는 명예와 고귀함을 나타내는 색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상징하며, 배경색인 자주색은 태양의 생명력을 담고 있는 깊고 무게감 있는 색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며 도민의 뜻에 귀를 귀울이는 의회를 나타내고 있음

금색, 의회글자 (Chungbuk Assembly Gold)		의회의 권위, 명예, 고귀함	R44 G208 B31 C5 M19 Y88 K0
자주색, 배경색 (Chungbuk Assembly Magenta)		태양의 생명력, 무게감	R137 G28 B33 C46 M100 Y100 K18

2. 심벌+로고타입

충청북도의회 상징 기본형은 흰색 배경위에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배경 위에 사용할 시 문구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색상을 변경한다.

영문 폰트명은 Pretendard Variable Bold 서체를 사용, 해당 폰트를 사용할 수 없을 시 유사 폰트로 대체한다. ※ 영문표기의 경우 의미전달이 가능하면 간결한 용어 및 표기로 가능

(1)기본형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

<가로형>

<세로형>

(2)국문·영문조합



충청북도의회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3)영문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별표 2]

의회기



1. 깃면의 크기 : 가로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가로:세로=3:2)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세로의 3/5
- 무궁화 모형의 가운데 원의 직경: 무궁화 모형 직경의 1/1.8
- “의회”자의 크기 : 원 직경의 0.8/1
- “충청북도의회”각자의 크기 : 세로의 1/2
- “충청북도의회”자 전체의 폭 : 가로의 1/2

2. 색상 : 깃발의 바탕은 보라색, 마크는 무궁화 5지는 노란색, 꽃잎과 꽃순 테두리, 꽃순 내부의 “의회”자는 금색, 꽃순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하며 로고(글씨)는 금색으로 한다.

보라색	노란색	금색	자주색
바탕	무궁화 5지	꽃잎과 꽃순 테두리, 의회 글자	원형
R63 G33 B130 C91 M100 Y20 K0	R232 G173 B33 C9 M208 Y88 K0	R232 G173 B33 C9 M37 Y90 K0	R46 G28 B33 C46 M100 Y100 K18

※ 의회기의 규격 및 마크·로고의 규격은 위 규격을 표준으로 하되, 필요시 길이(가로)와 너비(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규격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의원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궁화 모형의 직경 : 1.8cm ○ 무궁화 모형의 가운데 원의 외경 : 1.0cm ○ 무궁화 모형의 가운데 원의 내경: 0.8cm ○ “의회”자의 직경 : 0.6cm
--	--

[별표 4]

소통로고



<의미>

충북도의회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표현한 로고이며 신청사의 외관을 형상화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의회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음

<활용>

간행물, 의정전시관, 초대장, 봉투, 쇼핑백, SNS 등

<색상 기준>

중앙 무궁화 색은 고귀함을 나타내는 색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상징하며, 배경 색은 중립을 의미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나타내고 있음

무궁화		의회의 권위, 명예, 고귀함	R228 G192 B105 C13 M27 Y64 K0
배경		중립, 신뢰	R189 G165 B135 C31 M36 Y47 K0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1항 관련>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이메일: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		
<제출서류> 개인 및 법인 : 상징물 사용계획서 (디자인 이미지 포함)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제1항 관련>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FAX)	/이메일: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변경사유		
변경내용(사용출처 포함 구체적 작성)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귀하		